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3가단52931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19.

판 결 선 고 2023. 8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7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. 2. 11.부터 2003. 5. 3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, '채무자'는 '피고'로 한다)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
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,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,
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,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
것으로 본다)

판사 이호산

청 구 원 인

1.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금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 3311 보증채무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은 2013. 5. 22. 선고되어 2013. 7. 9. 확정되었습니다.
2. 하지만, 채무자는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여러차례 독촉등을 하였지만,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판결에 따른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,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2003. 2. 11.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